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5055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진홍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 종결2024. 11. 15.

판결 선고2024. 11.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5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2024. 11.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3. 3. 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3. 4. 3. 접수 제28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신성철

별지